

『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운영철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- 시정질문 운영 방식에 있어 보충질문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질문시간을 조정하여 1문 1답 시정질문 방식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정질문 시간(답변포함) 조정(안 제72조의2제2항)
 -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
-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자의 범위 단서규정 신설(안 제72조의2제2항)
 -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및 제71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규칙안은

-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목적으로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시정질문 시간(답변포함)을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하고 (안 제72조의2제2항)
-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음. (안 제72조의2제2항)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규칙안은
시정질문 운영 방식에 있어 질문 시간(답변포함)을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하고,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,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시정 질문자의 심도있는 질문으로 1문 1답 시정질문 방식의 질적 향상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수원시, 창원시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명문 규정을 둔 사례가 있음.
-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

-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71조(회의규칙)

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